

# 표준 발음법 분석과 대안

김선철(국립국어연구원)

## <차 례>

- |                 |                                  |
|-----------------|----------------------------------|
| 1. 서 론          | 2.8. 추가되어야 할 내용: 언어적 관점에서        |
| 2. 표준 발음법 분석    | 2.9. 정 리                         |
| 2.1. 제1장 총칙     | 3.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사이의 괴리<br>해결 방안 |
| 2.2. 제2장 자음과 모음 | 3.1. 제1안: 표준 발음법 개정              |
| 2.3. 제3장 소리의 길이 | 3.2. 제2안: 표준 발음법 유지              |
| 2.4. 제4장 받침의 발음 | 3.3. 제3안: <표준>으로 대체              |
| 2.5. 제5장 소리의 동화 | 4. 결 론                           |
| 2.6. 제6장 된소리되기  |                                  |
| 2.7. 제7장 소리의 첨가 |                                  |

## <Abstract>

### **'Pronunciation Methods of Standard Korean' Revisited**

**Seoncheol Kim**

Current 'Pronunciation Methods of Standard Korean(PMSK)' has several problems. Some of those are from conflicts with linguistic reality, and the rest are from their internal inconsistencies. So, we feel that it should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But it seems that the revision is not the best way, because linguistic change will make us revise it continually. The only way to establish its reasonable alternative is that we should update our descriptive dictionary whenever we need to.

\* Keywords: Pronunciation Methods of Standard Korean(PMSK), language planning, Standard Korean

## 1. 서 론

1988년에 문교부가 고시한 현행 표준어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표준 발음은 정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대략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 중에서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에 부합되게 정해진 발음”이라고 할 수 있다[1]. 이에 대한 몇몇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 표준어 규정의 제2부인 표준 발음법인데, 그 내용에 대한 평가 및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민현식[2], 許椿[3], 배주채[4]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었다. 그리고 고시 당시의 현실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언어 변화로 인하여 언어 현실과의 괴리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더불어 표준 발음법 및 이에 대한 해설인 국어연구소 편[5] (이하 <해설>로 줄임)의 오류 몇 개를 지적하고자 한다.1)

## 2. 표준 발음법 분석

현행 표준 발음법은 1988년 1월 19일 당시 문교부에서 고시한 표준어 규정에 포함되어 있고 전부 7장 30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규정 내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두 가지를 취할 수 있다. 하나의 시각은 이것이 표준어를 사전에 가려 실기 위한 지침의 일부로서의 표준어 사정 원칙과 더불어 단어의 발음 정보를 정하는 지침이라는 것이다. 표준어 규정에서 일컫는 표준어가 언어가 아닌 단어 차원이라는 것, 제21항에서 수의적 역행동화를 불허한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사전적 관점’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하나의 언어로서의 표준어의 음성적 측면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음소목록에 대해 언급한 제2장과, 어절의 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음운 현상을 기술한 제12항의 [붙임 2], 제15항, 제18항의 [붙임], 제27항, 제29항의 [붙임 2] 등이 그런 시각을 유도한다. 사전적 관점에 상대하여 이를 ‘언어적 관점’이라고 명명하겠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은 표준 발음법의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음 논의는 둘 중 어느 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각에서 표준 발음법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사전적 관점이나 언어적 관점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은 두 관점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제 각 장의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별도로 추가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본고의 심사를 맡아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분들의 지적으로 거친 원고가 그나마 논문의 형식을 띌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바이다.

## 2.1. 제1장 총칙

총칙에는 제1항만이 들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는 ‘표준 발음법’이라는 표현과 ‘표준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표준어’는 현행 표준어 규정에 의해서 어형과 발음이 다듬어진 일종의 인공어이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아지랭이’는 표준어가 아니고 ‘아지랑이’만이 표준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표준어의 발음을 규정하려는 ‘표준 발음법’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표준이 되는 발음법’일지라도 내용 면에서는 ‘표준어의 발음법’이 된다. 만약 ‘표준어’가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형과 발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연언어의 개념이라면 ‘표준 발음법’은 ‘표준이 되는 발음법’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위의 제1항은 사전적 관점과 언어적 관점 모두에서 동어반복의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하면 언어 혹은 단어로서의 표준어를 정의하는 역할을 하는 표준어 규정의 내용에서 표준어를 언급한다는 것은 순환논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제1항은 마치 ‘표준어의 발음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이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의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정안) 제 1 항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지적이 있었거니와 ‘교양 있는 사람들’의 범위와 ‘서울말’의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전자는 표준어의 지역 방언적 기준인 후자를 보충하는 사회 방언적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주관적인 기준이어서 표준어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는 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사회학 또는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듯하다. 이와 달리 ‘서울말’이 지역어의 개념이라면 방언 구획에 의한 객관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두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일이므로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그리고 앞에서 밝혔듯이 언어 차원의 개념인지 아니면 단어 차원의 것

인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일단 여기서의 서울말이 서울 토박이의 말이 아니라 행정구역상의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어 혹은 이 지역어의 단어라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자.

<해설>에서는 소리의 길이로써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점을 전통성의 일부로, 용언의 장음화 현상과 그 예외, 그리고 ‘맛있다’의 발음 가운데 하나로서 [마딤따]를 합리성의 일부로 들었다. 그런데 [마딤따]가 합리성을 지닌 발음이라고 설명한 것은 표준 발음법 규정 제29항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말에서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닐따]가 합리성을 지닌 발음이 되기 때문이다. 표준 발음법에서 [마딤따]를 도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2.2. 제2장 자음과 모음

여기에서는 제2항과 제5항에 걸쳐 표준어의 음소 체계를 기술하고 있는데, 사전적 관점에서는 제2항, 제3항, 제4항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언어적 관점에서 제2장의 내용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표준어의 자음을 19개(제2항), 모음을 21개(제3항)로 설정하였는데 내용상 음성 체계가 아닌 음소 체계를 이른다. 제4항에서는 21개 모음 가운데서 단모음은 10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혹은 8개(ㅏ ㅑ ㅓ ㅕ ㅗ ㅜ ㅡ ㅣ)라고 하였는데, 10개인 것이 원칙인 것으로 해석된다.

10모음 체계를 인정하는 비교적 최근의 입장으로는 김무림[6], 김민수[7], 이관규[8], 李秉根·崔明玉[8]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개 구조음운론의 이론적 관점에서 음운 체계를 논하는 것이므로 서울말의 음성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다. 광충구[10], 李丞宰[11]에서는 7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만 10모음 체계를, 김정수[12]에서는 /ㅓ, ㅕ/를 제외한 8모음 체계, 배주채[4], 신지영·차재은[13]에서는 /ㅓ/와 /ㅕ/, /ㅓ/와 /ㅕ/와 /ㅑ/가 각각 구분이 안 되는 7모음 체계, 오정란[14]은 /ㅕ/가 이중모음인 9모음 체계를 주장하는 등 학자마다 기술 내용이 다르다. 노년층의 서울 토박이말을 대상으로 연구한 유필재[15]에서도 불안정한 10모음 체계를 기술하고 있다. 차재은[16]에서도 /ㅓ/와 /ㅕ/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오류 차원을 떠나서 언어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이런 현실을 보건대 서울 지역어의 모음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세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면 어느 세대를 중심으로 표준어 모음 체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표준어의 단모음이 앞서 언급된 것들 중 가장 단순한 7모음 체계라고 한다면 표준 발음법에서 원칙적으로 11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라고 기술한 이중모음 체계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된다. 즉 /ㅑ/와 /ㅓ/, /ㅓ/와 /ㅕ/가 합류

하며, /기/가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10개 체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모음 체계의 기술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음소 차원의 것이었다. 그런데 <해설>에는 제4항에 대해서 /기/의 변이음으로 [ə]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포함시키는 음성적 단모음 체계는 11개 체계가 된다. 그러나 중부방언에서도 노년층에서만 장음과 함께 이 소리가 유지되고 있고, 장년층 이하에서는 장음의 소실과 함께 이 소리도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2)</sup>. 이러한 현실을 규정에 반영하려고 할 때 기왕에 규정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수정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해설>의 공신력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ə]가 존재한다고 보았다면 이호영[17]에 기술되어 있듯이 /기/와 /기/가 장음일 때 [ja:], [wa:]가 아닌 [jə:], [wə:]가 된다는 사실도 이중모음에 대한 항인 제5항의 해설에 추가되었어야 한다.

제4항의 [붙임]에서는 “기, 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단모음(각각 [ø], [y])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정밀하지 못한 표현이다. 말하자면 ‘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는지를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된다. 李丞宰[11], 이호영[17] 등의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이를 이치에 맞게 바꾸자면 “기, 기’는 [ø], [y]로 소리내는 것이 원칙이며 각각 이중모음 [we], [wi]로 바꾸어 발음할 수 있다’ 정도가 되어야 하겠다. 언어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국제음성기호를 동원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표기에 기대어 설명한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 태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의 유기적 구성에 거스르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전적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과 함께 언급할 것이다.

제5항 다만 2에서는 ‘예, 레’ 이외의 ‘κει’는 [ke]로도 발음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민현식[2]과 배주채[4], 차재은[16]에서는 ‘레’도 [re]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유어나 한자어에는 없는 음연결인 ‘세’가 ‘세퍼드’ 등의 외래어에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것도 [세퍼드]로 발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외래어 표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의 /케/는 원래대로 발음하도록 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5항의 다만 4 규정에 따르면 조사인 경우를 제외한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기/는 [k]로 발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김선철[19]에 따르면 ‘내과 의사’에 대한 발음 실태 조사 결과 [내과이사]보다는 [내과으사]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

2) 이호영[17], 최혜원[18] 참조.

3) <해설>의 제5항에 대한 부분과 유필재[15]에 따르면 노년층의 서울 토박이말에서 ‘열’에 서만은 습관적으로 [a:]가 나타난다고 한다.

타났다. 즉 비록 두 단어의 결합이었지만 이로 미루어 적어도 합성어 내부에서 두 번째 음절 이하의 모음 뒤 /-/는 [-]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의 문의에 대한 몇몇 서울말 화자의 답변에 따르면 합성어인 ‘미의식’은 [미:이식]보다는 [미:으식]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런 환경의 /-/가 모두 [-]로 발음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미의식’과 같은 구성인 ‘시의원’은 [시:으원]보다는 [시:이원]이 더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실태 조사에 근거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민현식[2]에서 역시 제5항의 다만 4 규정에 맞게 ‘강의의’의 발음에 [강:이의], [강:의에]<sup>4)</sup>를 추가해야 함을 지적한 것도 온당한 것이라고 본다.

### 2.3. 제3장소리의 길이

표준 발음법 제3장에서는 제6항과 제7항에 걸쳐 단어마다 전통적으로 고유하게 유지하고 있는 소리의 길이를 잘 구분하여 발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리의 길이란 구체적으로 단어의 제1음절에 나타나는 모음의 길이를 말한다. 그런데 언어적 관점에서는 국어의 범칙상 소리의 길이는 말할 때의 끊기와 관련이 깊는데 이러한 점이 표현되어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봐서[봐:서]’는 그 앞에 끊김이 있을 경우이나 나올 수 있는 발음이지, ‘너를 봐서’를 끊지 않고 한숨에 말할 때에는 장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발화 조건이 같이 명시되어야 제6항 다만 과 같은 조항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사전적 관점에서는 어절 연결에 있어서의 이런 발음 변화를 단어의 발음 정보에 반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방금 말한 것이 단점은 아니다.

제6항 다만 조항은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단 모든 합성어가 다 그렇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이 문제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상 대구 형식으로 된 4음절 한자어가 그 대상이라고 명시했어야 한다.

그런데 언어적 관점에서는 모든 경우에 이런 한자어의 제3음절에서 장음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발화 속도에서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밝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발화 속도를 언급하여야 하는 것 자체가 표준 발음법의 기술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발화 속도 차이에 따른 발음 변화가 여러 가지 경우로 나타날 것이고 이를 전부 발음법 규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발화 속도와 관련된 발음의 변이는 여기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표준 발음법의 내용을 언어적 관점으로 유지하려면 제2항 정도에서 발화 속도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장음 부호는 원래 민현식[2]에 없던 것을 국립국어연구원 편[22](이하 ‘<표준>’으로 줄임)에 비추어 필자가 추가하였다.

이보다 더한 문제는 최혜원[18], 김선철[19]에서 지적하였듯이 2대 이상의 서울 경기 토박이들도 젊은 층으로 갈수록 장단 구별을 잃어간다는 현실이다<sup>5)</sup>. 이들 연구가 350명 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통계적으로는 장단 구별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7항 1, 2의 다만 조항에 있는 ‘다음과 같은’이라는 표현의 해석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sup>6)</sup> 언급하는 내용이 이 다음에 예로 든 몇 개의 단어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류의 단어가 더 있다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제20항과 제22항에도 출현하며 제20항에 대한 <해설>에서는 개별적으로 정하여 사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준>도 이러한 해석에 입각하여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sup>. 이렇게 보는 이에 따라서 별개의 ‘해석’이 가능한 규범은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반감시키므로 분명하게 뜻이 드러나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 2.4. 제4장 받침의 발음

여기서는 먼저 음절말음으로 7종성만이 허용됨을 밝히고 있고(제8항, 제9항), 그 이후로 제16항까지는 한글 맞춤법의 받침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사전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어적 관점에서 어문규정의 전체 체계를 생각한다면 제4장에서 제9항과 제15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

5) 최근에 12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이와 유사한 연구가 정명숙·황국정[20]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그리고 현장 조사 연구는 아니었지만 이미 李崇寧[21]에서도 이런 경향을 관찰하였다.

6) 제7항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 — 감으니[가므니]    밝다[밥:따] — 밝으면[발브면]

신다[신:따] — 신어[시너]    알다[알:다] — 알아[아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끝다[끝:다] — 끌어[끄:러]

떨다[떨:따] — 떨은[떨:븐]

벌다[벌:다] — 벌어[버:러]

썰다[썰:다] — 썰어[썰:러]

없다[엷:따] — 없으니[엷: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 — 감기다[감기다]    꼬다[꼬:다] — 꼬이다[꼬이다]

밝다[밥:따] — 밝히다[발피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없애다[엷:썩다]

7) 예를 들어서 제20항의 다만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운론’의 발음은 <표준>에 [음운논]으로 올려져 있다.

은 기술 방향을 역으로 바꾸어 표준어 사정 원칙에 언급되어야 옳을 것이다<sup>8)</sup>. 왜냐하면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표준어의 어휘 형태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적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술’에 대해서는 [술], [소치], [소틀]로 소리나는 것을 표준 어휘 형태의 판단 근거로 삼아 ‘술’이라고 적는다고 하여야 하고, ‘넓죽하다’는 [넙쭈카다]의 음성 연결 형태로 구성되지만 형태소 구성을 고려하여 ‘넓죽하다’로 적는다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휘 형태가 ‘술’임을 밝힌 한 [술], [소치], [소틀]로 실현됨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준 발음법에서 언급하는 것은 언어적 관점에서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12항 1의 [붙임 2]에는 표준 발음법의 기능에 대해 혼동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다. 즉 사전적 관점의 표준어 규정이라면 표준어 규정 내부는 전체적으로 표준어형의 선정에 관한 표준어 사정 원칙이 있고 이에 맞추어 각 어형의 형태 음소적 기저형이 어떻게 표면형으로 실현되는가를 다루는 표준 발음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간혹 단어가 아닌 어절 연결의 발음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표준 발음법이 언어로서의 표준어 전체 국면에 대한 발음법을 기술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며, 발화 속도에 따른 발음 변화라든지 억양 등 운율 요소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사전적 관점에서는 제거되어야 하고, 언어적 관점에서는 이를 유지하면서 다른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고 본다.

제4장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김선철[19]의 조사 결과와 다른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0항과 관련하여 받침이 ‘래’인 ‘밧다’의 경우에 표준 발음법과의 불일치가 목격되었다. ‘밧지’는 다른 ‘래’ 받침과는 달리 [밧:찌]가 표준 발음인데 [밧찌]를 64%가 선호하였다. ‘밧고’는 [밧:꼬]가 표준 발음인데 [밧꼬]가 90%로 측정되었다. 또 제11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받침이 ‘리’인 ‘낱다, 맑다’의 경우이다. ‘낱지’는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낙찌]가 올바른데, 오히려 [날찌]가 70%로서 [낙찌]보다 더 선호되었다. ‘맑지’의 경우에도 [말찌]가 약 52%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이런 부류는 더욱 큰 규모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13항에는 연음법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배주채[4]는 현실적으로 체언말 유기음과 치찰음이 변화 중이어서 현재 구형과 신형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ㄱ>ㄱ’, ‘ㅍ>ㅍ’, ‘ㅌ, ㅊ, ㅈ>ㅈ’의 변화 결과 ‘부엌:부엌’, ‘술:숯’, ‘무릎:무릅’, ‘낫:낫’, ‘빋:빋’이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체언 말 자음군도 ‘ㄱ>ㄱ’, ‘ㄴ>ㄱ’, ‘래>ㄴ’, ‘ㅁ>ㅁ’ 등의 변화를 겪고 있어서 ‘몯:몯’, ‘닭:닭’, ‘여덱:여덱’, ‘값:값’ 등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찰이 사실이라면 ‘부엌이’를 [부어기]로 소리 내지 않고 [부어기] 등 [ㄱ] 대신 전면적으로 [ㄱ]으로 소리내거나, ‘닭이’를 [달기]가 아닌 [다기]

8) 언어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비단 제4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많은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등 [ㄹ기] 대신 전면적으로 [기]으로 소리내는 것은 표준 발음법에 반하는 잘못이 아니라 어형 선택의 잘못이 된다. 이것이 해당 단어의 기저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말음으로 유기음과 치찰음으로 표기하는 체언의 재구조화에 대해 언급해야 하겠다.

‘맛없다[마뎡따]’ 등의 절음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제15항에는 ‘맛있다[마뎡따]’를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다만 이하가 꾸며져 있다. 즉 제15항의 본 규정은 ‘맛있다, 멋있다’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가 전혀 없다. ‘있다’의 첫 음절 모음이 ‘ㅣ’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규정에 ‘맛있다, 멋있다’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대신 ‘맛있다’가 합성어이고 두 번째 요소의 첫 모음이 ‘ㅣ’이기 때문에 이것의 발음에 대한 정보를 주는 조항은 제29항이고, 이에 따르면 [만뎡따]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맛있다’류의 단어들을 처리하는 예외 규정을 제29항에 신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대로 사전적 관점에서는 어절 연결시의 발음에 관한 내용을 제거한다는 취지에서 ‘밭 아래’, ‘높 앞’ 등의 예는 삭제해야 하겠다.

## 2.5. 제5장 소리의 동화

이 부분은 제17항에서 구개음화, 제18항에서 장애음의 비음동화, 제19항에서 유음의 비음동화, 제20항에서 유음동화, 제22항에서 이중모음화 등을 다루고 있다. 제21항은 인정되지 않는 수의적 역행동화에 대한 것이다.

민현식[2]에서 제22항에 ‘되어, 피어’의 경우만 ‘-어’가 [어/여]로 소리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는 점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조항 첫 머리에 있는 ‘다음과 같은’이라는 표현의 해석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다룬 바 있다.

제18항 [붙임]의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는 규정은 어절 연결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전적 관점에서는 전체를 삭제하여야 한다.

## 2.6. 제6장 된소리되기

이 장에서는 제23항에서 장애음 뒤 경음화, 제24항에서 비음 어간 뒤 경음화, 제25항에서 자음군 용언 어간 뒤 경음화, 제26항에서 한자어에서의 경음화, 제27항에서 관형형 -(으)ㄹ 뒤 경음화, 제28항에서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등을 다루고 있다.

제26항에서는 규정하기를 한자어에서 ‘ㄹ’ 받침 다음의 ‘ㄷ, ㅅ, ㅈ’이 예외 없이

9) 許椿[3]에서는 ‘뜻있다’의 발음이 [뜨싡따]로 실현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15항의 다만 규정에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표준>에는 [뜨싡따]는 없고 [뜨뎡따]가 단독으로 실려 있다.

경음화 하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표현하였다. 그러나 <표준>에는 ‘불제자, 사살선, 사십구일재, 생활담, 수술대, 실세계, 실수요, 일출시, 쟁탈전’ 등 많은 한자어들이 이에 대한 반례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예외가 있다는 점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제27항은 어절 결합시의 발음 문제이므로 사전적 관점에서는 단어의 발음을 다루어야 하는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삭제하여야 할 대상이다.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를 다루는 제28항은 사이시옷이 일종의 형태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표준 발음법보다는 오히려 표준어 사정 원칙에 있어야 할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예로 ‘길가’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형태가 [길가]가 아닌 [길까]로서 형태소로서의 사이시옷이 개재하였다고 판단하며, 이것의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어 형성 시 사이시옷의 개재 여부가 불규칙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 제28항은 표준어 규정보다는 사전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 2.7. 제7장 소리의 첨가

제7장에는 ㄴ-첨가 현상과 사이시옷의 발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ㄴ-첨가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제29항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맛있다’를 예외로 명기해야 한다. 또 [불임 2]는 어절 결합의 경우이므로 사전적 관점에서는 삭제하여야 한다.

사이시옷의 발음을 다루는 제30항은 언어적 관점에서는 제28항과 같은 이유로 표준어 사정 원칙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표준어 사정 원칙에 넣지 않아도 좋다고 판단하더라도 3의 ‘사이시옷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는 표현은 ‘사이시옷 뒤에 ‘이, 야, 여, 요, 유’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으로 바꾸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 2.8. 추가되어야 할 내용: 언어적 관점에서

許椿[3], 차재은[16] 등에서는 표준 발음법에 억양 규정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언어적 관점에서는 타당한 견해이다. 표준어와 다른 방언 사이의 차이는 어휘보다는 억양에서 더욱 뚜렷하게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휘를 신는 사전에서 억양을 언급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전적 관점에서는 표준 발음법 규정에 억양에 관계되는 부분이 불필요하다. 그런데 억양 규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이다. Lee[23], Jun[24] 등의 음운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전문가적 억양 기술이 일반인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에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며, 또 실사용자를 배려한 기술 방

식을 음성학적 관점에서 고안한다고 하더라도 무한대의 변이형을 갖춘 억양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표준 어형을 정하듯이 일부 억양만을 표준 억양으로 삼는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 2.9. 정 리

지금까지 현행 표준 발음법이 내포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크게 다음 세 가지 부류로 묶어볼 수 있다. 첫째, 표준 발음법 자체의 모순 또는 표현의 부정확성, 비 일관성이 있다. 둘째, 언어적 관점과 사전적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셋째, 언어 현실과 서로 맞지 않는 점이 있다.

한편 許樞[3]에서는 현행 표준 발음법의 미비점으로서 외래어 및 외래어와 국어의 결합으로 된 낱말에 대해서 발음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온라인’, ‘웃로비’ 등의 발음 혼란의 원인이 표준 발음법에 그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것들이 단어인지 아닌지, 단어라면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외래어는 국어의 일부여서 국어사전에 등재해야 하지만 외국어는 국어의 일부가 아니므로 사전에 등재할 필요도 없고 발음도 정해야 할 필요 역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외래 어휘가 어느 정도 귀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외래어라 하더라도 그 발음이 여러 형태인 것이 반드시 혼란인지 아니면 발음의 다양성인지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즉 외래어나 외국어의 발음법을 어떤 논리적 규칙에 입각하여 일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검열’ 등의 한자어처럼 복수 발음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는지의 논의가 먼저 결론을 맺어야 한다. 오히려 외래어의 발음도 고유어나 한자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말의 발음 실태를 기반으로 어떤 법칙을 찾을 수 있으면 이를 표준 발음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정한 법칙이 없다면 사전에 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따름이라고 본다. 그러한 노력의 시작이 국립국어연구원[25]과 최혜원[18]이다.

앞에서 정리한 문제점 가운데서 첫째와 둘째 문제점은 성문화된 표준어 규정을 유지한다고 할 때 언제나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문규범 전체로 볼 때는 변화가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번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뒤따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법규정인 표준 발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언어 현실을 거스르면서 표준 발음법을 준수하라고 국민에게 촉구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둘 중 어느 하나가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포함한 몇 가지 해결 방안을 다음절에서 살펴볼 터인데, 이것이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이기 때문에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사전적 관점과 언어적 관점을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 3.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사이의 괴리 해결 방안

#### 3.1. 제1안: 표준 발음법 개정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표준 발음법을 언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일이다. 이병근[26], 차재은[16]에서 그런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언어 현실과 어문규정 사이의 거리를 없애는 방편이기는 하나, 표준 발음법을 믿고 따라온 일부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특히 현행 표준 발음법의 대원칙을 고수하여 온 방송계의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sup>10)</sup>. 또 어문규정이 20년도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 전체 규범의 보급에도 걸림돌이 되리라 여겨진다.

#### 3.2. 제2안: 표준 발음법 유지

언어 현실이 변화였다 하더라도 현재의 표준어는 변화여서는 안 된다는 태도로 표준 발음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입장으로는 權仁翰[1], 김성렬[27], 송철의[28, 29], 유풍천[30], 李丞宰[11]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과 학교 교육에서 현행 표준어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교육하도록 강제하여 보급이 한글 맞춤법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구어 표준어의 확산을 국가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표준어를 보급하지 않고서 규범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 학교에서의 표준어 교육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방법론상으로는 일차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표준어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 지방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어서 중부방언이 곧 표준어의 살아 있는 모델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법 개정에 따른 반발은 없겠지만 언어 현실과 동떨어진 규범은 국민이 무시하기가 쉽다<sup>11)</sup>. 또 무시하지 않더라도 현실과 차이가 있는 표준어를 익

10) 표준어의 전국적인 보급으로 방송의 지대한 역할을 손꼽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방송으로 보급된 것이 표준어 규정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언어 즉 표준어 규정에서 정의한 정확한 표준어는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중부방언(혹은 일반인의 관념으로는 이른바 '서울 말씨')이 보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를 필자는 현재의 공통어 혹은 중앙어라고 판단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방송을 비롯한 대개의 공중과 방송국들은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고서 이런 공통어와 다르면서 현행 표준어 규정과 거의 유사한 방송언어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1) 앞 절에서 말했듯이 현행 어문규범을 믿고 따르려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히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요구한다. 표준 발음법과 <표준>이 현실적인 복수의 발음이 아닌 '효과[효:과]'처럼 단 하나의 발음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방송인과 교육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어 제대로 실시될지 미지수이다. 또 방송인과 교육자들이 이를 잘 소화하더라도 피교육자들에게 효과적인 전달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국가가 국민의 언어를 적극 통제하려는 태도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연상케 하여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sup>12)</sup>. 결국 이는 국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준어를 설정하였다는 목표에 위배되는 방법이다. 또한 비현실적인 표준어는 결국 인공 언어이면서 관념에서나 존재하는 실존하지 않는 언어인데, 이러한 성격의 언어를 표준어로 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 3.3. 제3안: <표준>으로 대체

1988년에 문교부가 고시한 표준어 규정은 한글 맞춤법의 대상인 표준어 가운데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생각되는 몇몇 어휘에 대한 사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뿐<sup>13)</sup>이라는 관점이 제 3안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이로써 표준어의 전체 면모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준어 규정의 일부인 표준 발음법도 표준어의 일부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표준어 규정은 이를 충실히 반영할 국어사전의 대체물이었던 셈이다. 그러면 이미 <표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표준어 규정 전체가 불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표준>에는 표준어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뿐 아니라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표준>에는 표준 발음법 규정에 반하는 예가 실려 있기도 하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의 표준 발음법 규정보다 <표준>의 발음 정보를 우선시하면 될 것이다.

---

그 비율은 많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완벽하게 따르는 국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성문화된 표준어 규정의 존재 의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 12) 이미 문화연대(<http://culturalaction.org>)는 이러한 내용의 지적을 수차례 해 왔다(강내희 [31], 고길섭[32] 참조). 표준어 정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표준어 현상의 부조리성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코모리 요이치 [33] 참조).
- 13)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필자는 1988년 이전의 상황, 즉 사전마다 표준어에 대한 판단이 일부 달랐으며 이에 대해 사전 사용자가 나름의 평가를 내려 취사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쳐서 표준어가 정착되는 것이 옳다는 견해이고, 이런 맥락에서도 현행 표준어 규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준>은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관한 한 절대적인 규범 사전의 역할을 하여야 하겠지만, 언어 변화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는 발음 정보와 뜻풀이 정보에 대해서는 기술 사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 편찬자들이 끊임없는 실태 조사와 자료 축적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전 보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준 발음법은 국가가 고시한 것이고 <표준>은 고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 내에서 표준 발음법을 무시할 수 없다면, 당연히 표준 발음법의 폐기와 <표준>의 고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사회적 규범으로서 사전을 고시하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필자로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준>의 개정판이 발간될 때마다 정부에서 고시하기는 번거로운 일이다. 또 <표준>이 발음 정보에 대해서 기술 사전의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굳이 <표준>을 고시할 이유는 없다<sup>15)</sup>. 결국 <표준>의 고시는 불필요하지만 표준 발음법은 법 적용의 원활함을 위해서 폐기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4. 결 론

지금까지 이루어진 현행 표준 발음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의 일부로서 사전에 실을 표준어의 발음 정보를 정하는 원리를 담은 것 또는 언어로서의 표준어의 음성 부문을 기술한 것 등의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상반된 두 관점이 존재하도록 한 점 자체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표준 발음법의 단점이다. 그런데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규정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관점을 초월하여 문제가 되는 항목이 존재하기도 한다.

사전적 관점에서는 제2항, 제3항, 제4항, 제12항의 [붙임 2], 제15항, 제18항의 [붙임], 제27항, 제29항의 [붙임 2]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언어적 관점에서는 제6항, 제7항에 보충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또 4장의 대부분이 기술 방향을 역으로 바꾸어야 한다. 관점을 초월하여 제 1항은 동어 반복적 표현이기 때문에 개

14) 비슷한 관점에서 볼 때 폐기해야 할 어문규정이 있다면 표준어 사정 원칙이다. 이는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필요한 것인데, <표준>에 여기에 언급된 것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어 어휘가 표제어로 올라 있기 때문이다. 표준어 사정 원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세중[34, 35], 안상순[36] 참조.

15) 기술 사전으로 성격을 전환한다면 <표준>이 어떤 어휘의 발음에 대해서 표준이나 비표준이나 즉 옳으나 그르냐는 판단 기준으로서 쓰일 수 없게 된다. 어떠한 발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느냐 아니냐 만을 나타내줄 수 있을 따름이다. 다만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정했을 때 어떻게 보급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이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선의 여지가 있고,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26항은 언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28항과 제30항은 표준어 사정 원칙에 있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된다.

이들 외에도 규정 자체의 미비점이 몇 가지 발견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준 발음법에 수정이 가해져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3절에서 표준 발음법과 현실 언어와의 괴리를 해결하는 방안 세 가지가 검토되었다.

첫째는 표준 발음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언어 현실과의 괴리가 없어질 것이지만 개정안 정착 시까지의 혼란과 잦은 개정이라는 인식의 문제가 있다. 둘째는 표준 발음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개정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반면 시간이 갈수록 언어 현실과 동떨어지는 현상이 예상되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는 표준 발음법 규정을 폐지하고 국어사전의 기술에 의지하는 방법이다.

이 중에서 필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표준 발음법 대신에 서울말을 충실히 기술한—서울말에 없는 어휘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언 차용 방식을 동원한—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것이다. 법 개정이나 언어 현실과의 괴리 모두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방법은 언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기술 사전에 의지하자는 제3안을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중심어,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확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참 고 문 헌

- [1] 權仁翰, “표준 발음”, *새국어생활*, 제10권, 제3호, pp.153-160, 2000.
- [2] 민현식, “국어정서법 연구”, 서울: 태학사, 1999.
- [3] 許權, “우리말 ‘표준 발음법’ 보완”, *어문학*, 74호, pp.69-117, 2001.
- [4] 배주채, *한국어의 발음*, 서울: 삼경문화사, 2003.
- [5] 국어연구소 편, “표준어 규정 해설”, 1988.
- [6] 김무림, *국어음운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2.
- [7] 김민수, *신국어학*, 서울: 일조각, 1983.
- [8] 이관규, “학교문법, 한글맞춤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나타난 상처점”, *새국어교육*, 51, pp.37-57, 1995.
- [9] 李秉根·崔明玉, *國語音韻論*,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7.
- [10] 광충구,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pp.59-91, 2003.
- [11] 李丞宰, “모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pp.23-38, 1993.
- [12] 김정수, “우리네 말글살이의 현실(2)”, *한글새소식*, 333호, pp.9-13, 2000.
- [13] 신지영·차재은, *우리말 소리의 체계*, 서울: 한국문화사, 2003.
- [14] 오정관, *현대 국어음운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7.
- [15] 유필재,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16] 차재은, “언어 규범과 방송 언어의 오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방송 언어와 국어 연구*, pp.1-47, 서울: 월인, 2003.
- [17] 이호영,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1996.
- [18] 최혜원, *표준 발음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2.
- [19] 김선철, *표준 발음 실태 조사II*,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3.
- [20] 정명숙·황국정, “국어 한자어의 장단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1)”, *어문논집*, 42, pp.285-299, 2000.
- [21] 李崇寧, “現代 서울말의 accent의 考察”, *국어학논고*, pp.177-227, 서울: 동양출판사, 1960.(李崇寧, *李崇寧 國語學選集 3*, 민음사, 1988에 재수록).
- [22]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 [23] Lee, Ho-Young, *The Structure of Korean Prosody*, Seoul: Hanshin Publishing Co. Ph. 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1990.
- [24] Jun, Sun-Ah, “K-ToBI (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s”, <http://www.linguistics.ucla.edu/people/jun/ktobi/K-tobi.html>, 2000.
- [25] 국립국어연구원,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2001.
- [26] 이병근, “표준어”,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 pp.161-170, 1998.
- [27] 김성렬, “한국어 표준발음의 한 고찰”, *한국말 교육*, 7, pp.2-29, 1996.
- [28] 송철의, “자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pp.3-22, 1993.
- [29] 송철의, “표준 발음법”, *우리말 바로 알기*, pp.61-81, 서울: 문화관광부, 1998.
- [30] 유풍천, “표준어 발음 관심갖자”, 1992년 9월 5일자 동아일보, 1992.
- [31] 강내희, “표준어 고집 말고 다양성 수용을”, 2003년 2월 11일자 문화일보, 2003.
- [32] 고길섭, “국어 순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국어 순화 정책의 역사적, 문화적 비판-”, *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대회 자료집*, pp.35-44,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3.



- [33] 코모리 요이치(정선태 역), *일본어의 근대*, 서울: 소명출판, 2003.
- [34] 김세중, “표준어 규정의 문제점과 방향”, *제19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논문집*, pp.37-41, 2004 ㄱ.
- [35] 김세중,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14권 제1호, pp.105-122, 2004 ㄴ.
- [36] 안상순, “표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새국어생활*, 제14권 제1호, pp.67-83, 2004.

접수일자 : 2004년 5월 12일

게재결정 : 2004년 6월 1일

▶ 김선철(Seoncheol Kim)

주소: 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소속: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

전화: 02) 2669-9737

E-mail: sckim@mct.go.kr